

[별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조례 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건당)	비 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	입찰안내서 심의	800,000원	8인×1일×100,000원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 심의 또는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2개업체 응찰시	4,000,000원	20인×(1일×100,000원+100,000원)
		3개업체부터 4개업체 응찰시	6,000,000원	20인×(2일×100,000원+100,000원)
		5개업체부터 6개업체 응찰시	8,000,000원	20인×(3일×100,000원+100,000원)
		7개이상 업체 응찰시	10,000,000원	20인×(4일×100,000원+1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1일×100,000원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의 갱신만료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 경과후 시설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보도이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안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

물"이라 한다)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라 함은 신문·잡지류·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교통카드판매대"라 함은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①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점용허가를 하되,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만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④운영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①이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의 갱신 만료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시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운영자가 사망한 때
-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 3.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한 경과 후 시설물을 제거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도래시기에 공익목적상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보도이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적정수량·장소·허가기간·규모·시설물간의 거리·판매품목 및 운영자의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당해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대부계약 신청·기간·갱신 등은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와 같다.

제6조(시설물 관리) ①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발급·교부한다.

②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금지) ①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설물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기타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2.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 가.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나.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

<p>매행위에 한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p> <p>라. 기타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조례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p> <p>3.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p> <p>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p> <p>나.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p> <p>4. 교통카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p> <p>가. 교통카드·음료·과자류 및 신문·잡지류 이외의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p> <p>나.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p> <p>제8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 위치조정·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p> <p>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p> <p>제9조(시설물 철거) ①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p> <p>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경우. 다만, 제4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되는 경우</p> <p>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p> <p>②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를 시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도로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p> <p>③누구든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p> <p>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p>	<p>허가취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1조(점용료등 부과·징수) ①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p> <p>1. 점용료 :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p> <p>2. 대부료 :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0/1000</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대부료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다.</p> <p>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 및 제4항은 제외한다)</p> <p>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3.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허가취소·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p> <p>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별표1]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제2조 관련)

종 류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점용면적(m <sup>2</sup> )	비고
가 로 판 매 대	2.65×1.35×2.5	3.58 이내	2000년 이후 설치
	2.0(2.3)×1.2×2.3	2.0~2.76 이내	2000년 이전 설치
구 두 수 선 대	2.5(2.8)×1.3(1.5)×1.8	3.25~4.20이내	2000년 이전 설치
교 통 카 드 판 매 대	2.0×1.3×2.4	2.6 이내	2000년 이후 설치
	1.0×1.0(1.6)×1.8	1.20~1.60이내	2000년 이전 설치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3조 관련) ※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점용(대부)목적		⑤취급품목
⑥점용(대부)장소		⑦점용면적
⑧점용(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년이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3조 및 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수수료 1,000원

(뒷면)	
근거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40조제1항,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3조)</li> <li>○ 지방단치단체의 소유인 시설물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74조,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5조)</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82조 및 제80조의2)</li> <li>○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86조의2)</li> <li>○ 시설물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11조)</li> <li>○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 대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3조, 5조)</li> </ul>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제3조 관련)

제 호 : \_\_\_\_\_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

**【허가내용】**

1.점용장소			
2.점용면적		3. 취급품목	
4.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시도·구도)	
6.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이내)
7.점용료			

【허가조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기타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자는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 2) 음란·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등의 판매
    - 3)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 조리·판매(단,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 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햄버거·샌드위치·오징어류 및 김밥의 판매는 시장의 사전 승인 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허용)
    - 4) 기타,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담이·수선 이외의 행위를, 교통카드판매대 운영자는 교통카드·음료·과자류 및 신문·잡지류 이외의 품목을 판매할 수 없으며, 구두수선대 및 교통카드판매대 운영자는 “가”항에서 금지하는 영업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자는 본인 이외의 자에게 시설물의 운영을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영자 직계가족 중 1인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교대로 운영할 수 있다.
6.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및 담보로 제

- 공할 수 없다.
- 7. 허가받은 자는 허가와 관련하여 시설물을 성실히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운영자는 시설물과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나. 운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교체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수 없다.
  - 다. 시설물의 화재·파손 및 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허가 받은 운영자에게 있는 경우 자기 부담으로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라. 허가 받은 자는 시설물 외부에 상품·기타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보조 진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설물과 그 주변을 수시 세척하고 청결유지를 하여야 한다.
  - 마.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는 5일이상 폐점하여서는 아니된다.
- 8.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증, 시설물대부계약서(시설물 대부자에 한함),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 내에 항상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요구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9. 허가받은 자가 상기 각호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받은 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제5조 관련)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시설물을 “을”에게 대부하고 “을”이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	관리번호	○○○○년 - ○○구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설물 규격	가로 m × 세로 m ( m <sup>2</sup> )
	취급품목	

  

<p>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p> <p>제4조(대부료 등) ①대부료는 연간    원으 로 한다. 다만, “을”이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 의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 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p> <p>②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 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을”은 시설물을 운 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p> <p>②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을”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 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에서 정한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li> <li>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 권의 주장 금지</li> <li>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li> <li>4. “을”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 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인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 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 대로 운영 가능</li> <li>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기타</li> </ol>	<p>물건의 진열·적치 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li> <li>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 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 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li> <li>8. 기타 “갑”의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 는 행위</li> </ol> <p>제7조(취급 금지품목) “을”은 시설물에서 다음 각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단, 가로판매 대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한 핫도그, 햄버 거, 샌드위치, 오징어구이류 및 김밥의 판 매에 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거쳐 판 매 가능</li> <li>2.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음란·퇴폐서 적 및 녹음테이프 또는 품질보증이 필요 한 정밀기기, 귀금속류 등</li> <li>3. 기타 “갑”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 지하는 품목</li> </ol> <p>제8조(공과금) “을”은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시설물운영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 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p> <p>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의한 대부 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 전까지 대부계 약을 신청하되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기</p>
--	--

한까지(2005. 12. 31)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갑”의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의한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2005. 12. 31)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갑”과 “을”은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갑”과 “을”의 화해사항을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화해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지방재정법 및 “갑”의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 서울특별시 ○○○구( )  
구 청 장 ○○○ (인)

임차인(을) :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 ) 관리현황 (제6조 관련) (앞면)

관리번호							
위 치						설치년도	
운 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도로점용허가 · 대부계약 현 황	허가기간	면적(m <sup>2</sup> )	취급품목	부 과 액(원)			납부일
				계	점용료	대부료	
시 설 물  위 치 도							



(뒷면)

	점검일자	점검내용	조치	확인		
				담당	팀장	과장
시설물 운영상 태 점검						

(별지 제5호서식)

관리번호	
------	--

준 수 사 항 (제6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자에게 대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20cm×30cm 흰색 아크릴판 흑색글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운영자 증명서 (제6조 관련)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 . .
- 장 소 동 번지 호 (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영자

천연색 사진 (가로3cm×세로4cm)	천연색 사진 (가로3cm×세로4cm)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 규격 : 12cm × 16cm

(뒷면)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